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규정

제정 2010. 3. 5. 제52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의한 종합인력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조직) ①센터에는 인력개발지원부, 상담부를 둔다.
②인력개발지원부는 취업알선 및 취업대비 특별교육 등 인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③상담부는 상담 및 심리검사, 진로지도, 성폭력·성희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제3조(소장) ①센터에 소장을 둔다.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겸보할 수 있다
②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사업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
2. 인력개발교육
3. 학교생활과 취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발간
4. 취업 및 아르바이트 알선과 전산망 구축
5.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
6.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
7. 교양, 취업 및 기타 특강
8. 성희롱, 성폭력 관련 업무
9. 기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 제반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센터 소장, 교무과장, 학생과장과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소장이 된다.
④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소집) 운영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제7조(의결 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제8조(회의록)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②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한다.

부 칙

①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취업·상담센터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.